

# 심 사 보 고 서

—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,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—

의 회 후 영 위 원 회

# 화순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3. 31 박병욱 의원외 2인
- 나. 회 부 일 자 : '97. 4. 10
- 다. 상 정 일 자 : '97. 4. 10  
(제5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)

### 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자 : 문정조 의원
- 나. 제안이유
  - 국내여비중 숙박비 및 현지교통비의 단가현실화 조치에 따른 국내여비 규정이 '96. 12. 31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일부 개정키 위함.
- 다. 주요내용
  - 제5조 제1항 "현지교통비"를 "일비"로 하고 "숙박비"를 "숙박료"로 개정
  - 제8조 제1항중 국내여비 기준단가 인상 (별표 참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민병항)

- 동 조례 개정안은 국내여비중 현지교통비 및 숙박비 단가의 현실화 및 명칭을 변경키 위한 개정조례로서,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### 4. 질의답변요지

"생 략"

### 5. 토론요지

"생 략"

6. 심사결과

『 원안가결 』

7. 첨부

화순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#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7 - 34
----------	---------

제출 년월일 : 1997. 3. 31.

제 출 자 : 박병옥 의원의 2

## 1. 제안이유

- 국내여비중 숙박비 및 현지교통비의 지급단가 현실화 조치에 따른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 ('96. 12. 31)됨에 따라
-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동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국내여비중 현지 교통비 및 숙박비 명칭변경 (안 제5조 제1항)
- 국내여비 기준단가 인상 (별표 1)

## 3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32조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
- 국내여비 규정

##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1항중 "현지교통비"를 "일비"로 하고, "숙박비"를 "숙박료"로 한다.

제8조 제1항중 "별표 1"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국내여비지급기준표 (제8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철 도 운 입	선 박 운 입	항 공 운 입	자동차 운 입	일 비 (1일당)	숙박료 (1야당)	식 비 (1야당)
의 장 부 의 장	1등급	2등 정액	정액	정액	10,000	41,000	25,000
의 원	2등급	2등 정액	정액	정액	10,000	19,500	18,000

1. 화순군 내에서의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. 다만, 화순군내라 하더라도 벽지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2.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## 신. 구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5조 (여비의 종류) ①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(철도운임, 선박운임, 항공운임, 자동차운임), <u>현지교통비, 숙박비, 식비</u>로 구분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【별표 1】 국내여비지급기준표 (제8조제1항관련) (단위:원)</p>	<p>제5조 (여비의 종류) ① - - - - - - - - - - ( - - - - - - - - ) <u>일비, 숙박료</u> - - - - - - - - - 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【별표 1】 국내여비지급기준표 (제8조제1항관련) (단위:원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font-size: small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철도 운임</th> <th>선 박 운 임</th> <th>항 공 운 임</th> <th>자 동 차 운 임</th> <th>현 지 교통비 1일당</th> <th>숙박비 (1야당)</th> <th>식 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의 장 부의장</td> <td>1 등급</td> <td>2등 정액</td> <td>정 액</td> <td>정 액</td> <td>6,500</td> <td>37,500</td> <td>25,000</td> </tr> <tr> <td>의 원</td> <td>1 등급</td> <td>2등 정액</td> <td>정 액</td> <td>정 액</td> <td>6,500</td> <td>18,000</td> <td>18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철도 운임	선 박 운 임	항 공 운 임	자 동 차 운 임	현 지 교통비 1일당	숙박비 (1야당)	식 비	의 장 부의장	1 등급	2등 정액	정 액	정 액	6,500	37,500	25,000	의 원	1 등급	2등 정액	정 액	정 액	6,500	18,000	18,000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font-size: small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철도 운임</th> <th>선박 운임</th> <th>항 공 운 임</th> <th>자 동 차 운 임</th> <th>일 비</th> <th>숙박료 (1야당)</th> <th>식 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의 장 부의장</td> <td>1 등급</td> <td>2등 정액</td> <td>정 액</td> <td>정 액</td> <td>10,000</td> <td>41,000</td> <td>25,000</td> </tr> <tr> <td>의 원</td> <td>1 등급</td> <td>2등 정액</td> <td>정 액</td> <td>정 액</td> <td>10,000</td> <td>19,500</td> <td>18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 공 운 임	자 동 차 운 임	일 비	숙박료 (1야당)	식 비	의 장 부의장	1 등급	2등 정액	정 액	정 액	10,000	41,000	25,000	의 원	1 등급	2등 정액	정 액	정 액	10,000	19,500	18,000
구 분	철도 운임	선 박 운 임	항 공 운 임	자 동 차 운 임	현 지 교통비 1일당	숙박비 (1야당)	식 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 장 부의장	1 등급	2등 정액	정 액	정 액	6,500	37,500	25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 원	1 등급	2등 정액	정 액	정 액	6,500	18,000	18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 공 운 임	자 동 차 운 임	일 비	숙박료 (1야당)	식 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 장 부의장	1 등급	2등 정액	정 액	정 액	10,000	41,000	25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 원	1 등급	2등 정액	정 액	정 액	10,000	19,500	18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1. 화순군 내에서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<u>현지교통비와 식비</u>만을 지급한다.</p>	<p>1. - - - - - - - - - - <u>일비</u> - - - - - - - - - -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# 신. 구문 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<p>다만, 화순군내라 할지라도 벽지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